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가합109873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임영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2. 22. C에게 5억 원을 이자 5천만 원, 변제기 2022. 9.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1. 이후 무렵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작성된 차용증 말미에 자필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각 작성하고, 피고의 이름을 서명하고, 이어 "위 채무에 대해 책임을 민형사상 보증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원리금에 관한 보증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와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22. 9. 30.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원금 5억원과 그 약정이자인 5천만원을 합한 5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당초 체결하였던 보증계약의 주채무자는 원고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채무자가 C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을 주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적어도 3억 4천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이어 최근 2억원 가량의 현금 변제 의사가 기재된 증서까지 전송받으면서 협의 의사를 내비쳤으나 그 이후 갑자기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의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화, 판사 장천수, 판사 이현우